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박혜영¹ · 최은정² · 이은남³

¹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응급실 수간호사, ²영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³동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of Emergency Room Nurse

Park, Hye Young¹ · Choi, Eun Jung² · Lee, Eun Nam³

¹Emergency Room Head Nurse, Dongnam Inst.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oungsan University, ³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a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nd to identify predictors of emergency room (ER) nurse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cases.

Methods: A total of 364 nurses in ER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r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84.1 % of emergency room nurses reported feeling of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was predicted by emergency room nurse's attitude, perceived behavior control, subjective norm, ER nurse career, and recognition as a reporting obligator. **Conclusion:** Child abuse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help ER nurses to report child abuse case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reporting the cases.

Keywords: Attitude, Child abuse, Intention, Emergency nursing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 기능이 약화되면서 아동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00). 보건복지부의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에 따르면 2001년 4133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08년 9570건으로 2.3배 증가하였고 보호아동수도 2001년 2105명에서 2008년 5578명으로 2.6배 급증하여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은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주의력 결핍, 공격성 행동장애, 불안, 우울 등의 정서문제와 사회 부적응문제를 나타낸다(Kolko, 1992). 간호사는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여 신고하고 적절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

투고일: 2013. 10. 23 심사의회일: 2013. 11. 13 게재확정일: 2013. 12. 10

주요어: 태도, 아동학대, 의도, 응급간호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i, Eun Jung

Department of Nursing, Youngsan University, 288 Junam-ro, Yangsan, Gyeongnam, Korea, 626-790
Tel: 82-55-380-9442, Fax: 82-55-380-9305, E-mail: grace1005@hanmail.net

므로 아동학대 관련법과 피해자 및 가해자를 적절히 다루는 법 등에 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어(Feng, 2003; Thomas & Jamieson, 1995) 학대받은 아동을 도와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서는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26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의료인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Kim, 2004; Kim & Park, 2005).

학대아동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신고의무자의 행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하나의 요인만으로 아동학대 신고행동을 파악할 수는 없다. Ajen과 Fishbein (1977)은 계획적 행위이론(Theory Planned Behavior: TPB)에서 행위의 직접적인 결정인자로 행위의도를 제시하였는데, 행위의도는 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위 통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행위에 대한 태도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가리킨다. 주관적 규범은 그 개인이 속한 준거 집단, 가족, 친구, 사회 등의 인지된 기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관한 기대를 뜻하며 행위의 수행여부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압력을 뜻한다. 지각된 행위 통제는 행위 수행의 용이성 또는 어려움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데 이는 실제적 통제를 반영하고 있다. 선행연구(Kim & Park, 2005)에 의하면 신고자의 직업, 아동학대에 대한 훈련정도, 지식,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아동학대의 심각도 등이 신고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eo (2004)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곧바로 아동학대 신고의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학대 신고의 효과가 클수록, 아동학대 신고의 장애물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더 적극적인 신고의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Feng (2003)은 대만 간호

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과 아동학대 신고행위에 대한 지각된 통제력이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고, Kim과 Park (2005)은 간호사의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예측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아동학대 신고행위는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으므로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실로 내원한 소아학대 환자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소아학대 환자 중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Choi et al., 2000), 이는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아동이 응급실 진료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신고의무자로서 의료인 중 응급실 간호사가 일차적 대면자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가 아동학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신고의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신고경험과 신고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신고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시설에서 아동과 가족을 제일 먼저 접촉하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응급실에서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의료인의 역할을 고양시키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의식의 고취와 학대아동의 조기발견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 2)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와 주관

- 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조사한다.
- 3)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 4)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와와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 5)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응급실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신고의도를 조사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45개 응급의료기관을 임의 표집한 후 간호부와 접촉하여 설문조사를 허락한 19개 종합병원 응급실과 6개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44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02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0.8%), 그 중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364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 선정에 대한 Cohen (1988)의 공식에 따르면 검정력을 .80,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로 했을 때 회귀분석을 하는데 적절한 표본 수는 230개 이상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표본크기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주관적 규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참조하여 연구에 필요한 항목을 재구성 한 후 간호학과 교수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어색한 표현들은 수정하였다.

1)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문항은 선행연구(Kim, 2004; Lee, 2000; Yun, 2002)에서 사용된 도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5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각 문항은 “의료진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까?”,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까?”,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학대받는 아동을 신고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고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다.

2)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Kim과 Yoon (2003)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란 응급실 간호사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평가한 정도를 말한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는 13문항이었으나 1, 2차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3명의 전문가 중 2명이상으로부터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를 받은 문항인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럽다”와 “부모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2문항은 제거하고, 문항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3문항을 추가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추가된 문항은 “간호사는 학대받은 아동을 옹호해야한다”, “간호사는 아동이 계속 학대받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아동학대는 단지 가족문제일 뿐 다른 사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이고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매우 그렇다, 5=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고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Kim과 Yoon (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2$ 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다.

3)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주관적 규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는 도구는 총 4문항으로 1, 2차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4문항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내 가족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내가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기대한다”, “나의 직장동료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내가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기대한다”, “나의 수간호사나 관리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내가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기대한다”, “나의 친구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내가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기대한다” 이고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매우 그렇다, 5=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위사람들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압력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4)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Kim과 Park (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행위통제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행위통제의 측정도구는 본래 8문항이었는데 1,2차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3명의 전문가 중 2명 이상으로부터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은 문항인 “나는 아동학대보다 임상 실무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 1문항을 제거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매우 그렇다, 5=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행위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과 Park (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5) 아동학대 신고의도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의심되는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할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 Kim과 Park (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도 측정도구는 본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2차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 3명의 전문가 중 2명 이상으로부터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된 문항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를 다하기로 결심하였다” 2문항을 제거하여 총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문항은 “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를 이행할 생각이다”와 “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이고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매우 그렇다, 5=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고의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Kim과 Park (200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2개월이었다. 연구자가 전화로 각 병원 간호부의 부서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얻은 병원의 간호부를 통해 해당 응급실에 설문지를 배부한 뒤 기관별로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5. 자료 분석 및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of window 17.0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신고의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에 따른 신고의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신고의도와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5)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설문지 응답을 허락한 각 병원의 부서장의 대리 구두설명을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한다는 것과 응답도중이라도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전했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

연구 대상자는 여자가 337명(92.6%)이었으며, 연령분포는 25~30세미만이 137명(37.6%)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275명(75.5%)이 미혼이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는 79명(21.7%)이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 243명(6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이상이 30명(8.2%)이었다. 139명(38.2%)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고, 응급실 경력은 1~3년 미만인 121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직책을 보면 일반간호사가 316명(86.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상자 중 306명(84.1%)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세미나 및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근무하는 병원은 권역응급센터가 60명(16.5%), 전문 외상기관이 36명(9.9%), 지역응급센터가 147명(40.4%),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121명(33.2%)으로 지역 응급센터가 가장 많았다. 근무 지역은 부산·경남이 206명(56.6%)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서울·경기, 전남, 충남 순이었다(Table 1).

본 연구대상자 중 306명(84.1%)은 의료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304명(83.5%)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응답했고, 290명(79.7%)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할 수 있는 기관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대상자 중 105명(28.8%)은 근무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례를 접한 경험이 있고 그 중 17명(16.2%)만이 발견한 사례를 신고한

것으로 보고했다(Table 2).

2.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신고의도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39점±0.48이었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38점±0.77이었으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85점±0.60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64점±0.69이었다(Table 3).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응급실 간호사의 최종학력과 응급실 경력에 따라 신고의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이 대학원이상(3.92±0.79)인 경우에 전문대졸(3.58±0.66)에 비하여 신고의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F=3.57, p=.029$), 응급실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3.88±0.65)가 1~3년 미만(3.55±0.68), 3~5년 미만(3.46±0.65), 5년 이상(3.67±0.76)인 경우에 비하여 신고의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75, p=.001$).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세미나 및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3.80±0.69)가 경험이 없는 경우(3.60±0.70)에 비해 신고의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2.02, p=.044$)(Table 1).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에 따른 신고의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대상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지 알고 있는 경우($t=4.54, p<.001$), 아동학대 사례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t=2.25, p=.025$), 학대받는 아동발견 시 신고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t=2.19, p=.029$),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t=2.41, p=.017$)에 신고의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Comparison of Inten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64)

Characteristics	Category	n	%	Intention	t/F	p
				M±SD		
Gender	Men	27	7.4	3.83±0.84	1.55	.121
	Women	337	92.6	3.62±0.69		
Age (yr)	<25	108	29.7	3.69±0.62	1.03	.378
	25 - 29	137	37.6	3.57±0.66		
	30 - 34	64	17.6	3.59±0.81		
	≥35	55	15.1	3.72±0.80		
Spouse	Yes	89	24.5	3.69±0.81	-.75	.454
	No	275	75.5	3.61±0.66		
Children	Yes	79	21.7	3.69±0.82	.740	.461
	No	285	78.3	3.62±0.67		
Education	Diploma	243	66.8	3.58±0.66 ^b	3.57	.029
	College	91	25.0	3.69±0.75 ^{ab}		
	≥Master	30	8.2	3.92±0.79 ^a		
Religion	Christian	100	27.5	3.72±0.66	1.63	.165
	Buddhism	63	17.3	3.48±0.76		
	Catholic	45	12.3	3.76±0.56		
	No	139	38.2	3.61±0.74		
	Others	17	4.7	3.50±0.66		
Emergency nurse career (yr)	<1	78	21.4	3.88±0.65 ^a	5.75	.001
	1 - <3	121	33.2	3.55±0.68 ^b		
	3 - <5	72	19.8	3.46±0.65 ^b		
	≥5	93	25.6	3.67±0.76 ^b		
Position	Staff nurse	316	86.8	3.63±0.68	-0.17	.864
	≥Charge nurse	48	13.2	3.63±0.8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child abuse seminar or education	Yes	58	15.9	3.80±0.69	2.02	.044
	No	306	84.1	3.60±0.70		
Type of hospital	Regional emergency center	60	16.5	3.46±0.65	.07	.942
	Special trauma center	36	9.9	3.67±0.63		
	Local emergency center	147	40.4	3.73±0.69		
	Local emergency hospital	121	33.2	3.59±0.74		
District	Seoul/Kyonggi	43	11.8	3.91±0.69	2.43	.065
	Busan/Kyongnam	206	56.6	3.55±0.72		
	Chonbuk	78	21.4	3.61±0.62		
	Others	37	10.2	3.80±0.69		

a)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Comparison of Intention by Recognition to Report Child Abuse of the Subjects (N=364)

Item	Categories	n	%	Intention	t	p
				M±SD		
Do you know the medical staff is a reporting obligator of the child abuse?	Yes	306	84.1	3,70±0,68	4,54	,000
	No	58	15,9	3,26±0,68		
Do you know the telephone number to report the case of the child abuse?	Yes	60	16,5	3,82±0,76	2,25	,025
	No	304	83,5	3,60±0,69		
Do you know the agency you have to report the case of the child abuse?	Yes	74	20,3	3,79±0,79	2,19	,029
	No	290	79,7	3,59±0,67		
Have you encountered the case of child abuse?	Yes	105	28,8	3,61±0,73	-0,39	,699
	No	259	71,2	3,64±0,69		
Have you reported the case of the child abuse? (n=105)	Yes	17	16,2	4,03±0,82	2,41	,017
	No	88	83,8	3,61±0,69		

Table 3.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of the Subjects (N=364)

Variables	M	SD	Minimum	Maximum
Attitude	3,39	,48	2,14	5,00
Subjective norm	3,38	,77	1,00	5,00
Perceived behavior control	2,85	,60	1,29	5,00
Intention	3,64	,69	2,00	5,00

4.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신고의도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와 신고의도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r=.53), 주관적 규범(r=.45), 지각된 행위통제(r=.54) 모두 신고의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와 주관적 규범(r=.31),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r=.31), 지각된 행위통제와 주관적 규범(r=.45)간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최종학력과 응급실 경력, 아동학대와 관련된 세미나 및 교육 참석 유무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 항목 중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4개 항목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위통제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독립변수 중 명목변수인 최종학력과 응급실 경력, 아동학대와 관련된 세미나 및 교육 참석 유무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 4개 항목

Table 4. Correlations among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of the Subjects (N=364)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Attitude	1		
Subjective norm	,31(<.001)	1	
Perceived behavior control	,31(<.001)	,45(<.001)	1
Intention	,53(<.001)	,45(<.001)	,54(<.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of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of the Subjects

(N=364)

Variables	B	SE	β	t	p	R ² change
Constant	.93	.30	-	3.13	.002	-
Perceived behavior control	.35	.05	.31	6.92	<.001	.29
Attitude	.50	.07	.32	7.67	<.001	.15
Career as an emergency nurse (<1 yr)	.23	.06	.13	3.52	<.001	.04
Subjective norm	.13	.04	.14	3.30	.001	.02
Whether or not knowing as a reporting obligator of the child abuse? (1=yes, 0=no)	.17	.08	.09	2.29	.023	.00

$R^2 = .50, F = 68.29, p < .001$

은 가변수(dummy)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 검정을 한 결과 독립변수들의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10미만으로 나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음이 확인되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변인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beta = .32, p < .001$)였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beta = .31, p < .001$),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주관적 규범($\beta = .14, p = .001$), 응급실 경력($\beta = .13, p < .001$), 의료진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beta = .09, p = .0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50%였다($F = 68.29, p < .001$).

IV. 논 의

본 연구는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응급실 간호사들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응급실 간호사들의 신고인식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의 84.1%가 신고의무자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Yun (2004)의 연구에서 40%, Kim과 Park (2005)의 연구에서 75.4% 그리고 Kim, Yun과 Lee (2006)의 연구에서 58.7%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신고의무자로서의 인식이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의 대상자를 응급실 간호사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에 대한 인식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중 28.8%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한 경험이 있

으나 그 중 16.2%만이 발견한 사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Park (2005)의 연구에서도 소아과 간호사와 응급실 간호사들의 42.1%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였고 이들 중 5.5%가 신고하여 신고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Yun (2004)은 소아과 간호사의 58.9%가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여 그중 24.7%가 신고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보다 신고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대상자들이 근무하는 병원 내에 아동학대 상담소가 있어 간호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고 신고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83.5%가 신고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었으며 79.7%가 신고기관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Kim 등(2006)의 연구에서도 8.4%만이 신고전화번호를 안다고 응답했고 신고기관에 대해서는 3.5%가 112, 2.1%가 1339로 응답해 신고전화번호와 신고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대중매체와 마스크의 보도가 아동학대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신고방법과 신고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부족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고기관과 신고절차를 잘 알린다면 신고의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Yun (2004)은 병원 내 상담소의 신고 건수가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보다 많았다고 하였으므로 병원 내에 아동학대 상담소나 신고부서를 두는 것이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느끼는 심리적인 불편감이나 두려움을 해결하고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

이라 생각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응급실 근무경력에 따라 신고의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응급실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신고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un (2002)의 연구에서도 경력이 4~10년이 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11년 이상 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3년 이하 된 신고의무자보다 신고의도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실무경력에 따라 아동학대 심각성의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어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아동학대 문제를 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므로(Lee, 2000)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 특성 중 학력에 따라 신고의도에서 차이를 보여 학력이 대학원 이상일수록 신고의도가 높았다. 이는 신고 의무자의 학력에 따라 대학원 재학 이상에서 신고의도가 높게 나타난 Yun (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간호사는 교육과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많으므로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 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세미나 및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신고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84.1%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세미나 및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급실 간호사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교육에 대한 홍보 또한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Lee (2003)는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31.7%가 세미나 및 교육의 경험이 있고 이들 중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및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신고의무자에 비해 교육경험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대학 교육과정 또는 자격이수과정 중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핀란드의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의 60%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Paavilainen, Astedt-Kurki, Paunonen-Llmonen, & Laippala, 2002), Kim과 Park (2005)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95.9%가 아동학대예방 및 중재를 위한 교육이나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아동학대 예방 및 중재를 위해 응급실 간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는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수용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신고의도가 높았다. Feng (2003)의 연구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적인 태도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주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학대는 단지 가족의 문제일 뿐 다른 사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와 “간호사는 학대 받는 아동을 옹호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아동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의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신고할 때 신분이 노출될까봐 부담스럽다”의 태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호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공식적인 개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에 관해 상당한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 이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의 마련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을 고려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지각된 행위통제도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응급실 간호사가 아동학대 신고가 용이하고 어려움이 적다고 인식할수록 신고의도가 높았고 응급실 간호사가 학대 아동을 발견하여 신고하자 할 때 신고기관, 신고 전화번호 등 이용 가능한 정보와 신고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신고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eng (2003)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행위통제는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Kim과 Park (2005)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행위통제는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의 문항 중 응급실 간호사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방법에 대한 지식정도,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정도, 아동학대를 신고하는데 필요한 전문직 교육의 정도에 대한 문항들은 점수가 낮아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Park (2005)의 연구에서도 같은 문항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지각된 행위통제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아동학대 신고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평균점수는 3.64점이었고 “응급실 간호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의 평균점수는 3.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응급실 간호사가 아동학대 사례 발견 시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를 이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Choi (2005)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81.2%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할 것이다” 라고 응답했다고 보고하였고, Seo (2004)의 연구에서도 신고의무자들의 80% 이상이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했을 때 신고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전반적인 아동학대 신고 의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곧바로 아동학대 신고행위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학대아동 발견 시 응급의료인의 44.2%가 동료의료인과 상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Kim, 2004), 이는 즉각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하기보다는 동료들과의 상의와 합의를 거친 후 아동학대 신고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병원에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중 병원 내 직원이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신고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동료들이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환경조성도 필요할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관습상 가정 내 문제로 간주하거나 신고의무자들이 직접적인 개입을 꺼려하므로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결과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주관적 규범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행위의 결정인자로 행위 의도를 제시하고 행위 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

된 행위통제 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 Ajzen과 Fishbein (1977)의 계획된 행위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적극적인 신고행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신고기관과 신고방법을 홍보하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신고의도를 조사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아동학대 신고방법이 쉬울수록,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응급실 경력이 1년 미만이고 의료진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할수록 신고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응급실 간호사의 신고의도가 신고행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신고의무를 강조하고 신고절차와 방법을 교육시켜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신고행위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신고행위의 의도를 분석한 것이므로 실제 아동학대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신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응급실 간호사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jen, I., & Fishbein, M. (1977). Attitude-behavior relation: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4*, 888-918.
- Choi, J. T., Ahn, M. E., Ahn, H. C., Choi, Y. M., You, K. C., Cho, Y. J., et al. (2000). Victims of child abuse to present to the emergency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11*(1), 111-119.
- Choi, S. J. (2005). *A study on the effect of mandatoring report's reporting awareness for child abuse upon report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behavior science*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eng, J. Y. (2003).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 national survey of Taiwanese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USA.
- Kim, J. M. (2004).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emergency medical personnel on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 Kim, J. S., & Park, G. S. (2005). Predictors of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mong nurse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1*, 211-220.
- Kim, S. Y., & Yoon, H. M. (2003). Educare center teacher's attitudes toward child abuse and child abuse reporting. *Journal of Human Ecology, 7*(1), 121-140.
- Kim, Y. H., Yun, E. Y., & Lee, N. Y. (2006). Survey on perception of child abuse among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0*, 189-197.
- Kolko, D. J. (1992). Characteristics of child victims of physical viol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Violence, 7*, 244-276.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00). Child welfare law. Retrieved March 15, 2009.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x=38&y=19#liBgcolor0>
- Lee, H. H. (2003). *Study on how to activate the reporting obligations on child abuse: Focused on status of child abuse and the perception of reporting respon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Incheon.
- Lee, S. Y. (2000).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Child abuse report. Retrieved June 20, 2009. from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12507&page=1
- Paavilainen, E., Astedt-Kurki, P., Paunonen-Llmonen, M., & Laippala, P. (2002). Caring for maltreated children: A challenge for health care educ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e, 37*, 551-557.
- Seo, Y. K. (2004). *Influence factor on reporting intention of reporting obligator on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Thomas, B. H., & Jamieson, E. (1995). Childhoo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child sexual abuse: Results of a canadian survey of three professional group. *Child Abuse Neglect, 19*, 1019-1029.
- Yun, O. B. (2004). *Study on the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nurses at pediatrics ward about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Yun, Y. B. (2002). *Study on the perception and behavior of persons responsible for reporting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